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4월 2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동반성장팀 최우혁 팀장(02-2110-3994), 홍충완 사무관(3997)		

지경부, “성과공유 확인제” 본격 가동

- 확인 실적에 따라 동반성장지수, 정부조달 · R&D 등 인센티브 제공 -
- 성과공유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모델 개발 · 보급 예정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: 홍석우)는 4.23(월)부터 성과공유제의 활성화를 위한 “성과공유 확인제*”의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
* ①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여부와 ②개별과제의 성과공유제 해당 여부에 대해 ‘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(대·중소기업협력재단내)’에서 공식적으로 판단·확인해주는 제도

○ 지경부는 성과공유 확인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“성과공유 확인제 종합관리시스템(http://www.benis.or.kr)”의 구축을 완료하고 이날 오픈했다.

○ 이에 따라 각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이날부터 동 사이트를 통해 성과공유 확인 신청이 가능해 진다.

□ 성과공유 확인제는 ‘도입기업 확인’과 ‘성과공유과제 확인’ 2단계로 운영된다.

○ ‘도입기업 확인’은 위탁기업으로서 성과공유제를 위한 체제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,

- 2년간의 성과공유제 시행계획서, 기업 내부규정, 전담부서·인력 설치,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.

○ ‘성과공유과제확인’은 수·위탁기업간 추진하는 개별 성과공유과제에 대한 확인으로서,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,

- 성과공유과제 계약서, 사업계획서의 사전 등록, 수·위탁기업별 과제 수행 내역, 발생한 성과와 공유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□ 지경부는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기업·기관별 확인제 실적을 점검하고,

○ 확인 실적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지수,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시 우대, 우수기업 선정·포상, 정부 조달·R&D, 해외동반진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.

□ 한편, 지경부는 확인제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 모델의 개발·보급에 나선다.

○ 이를 위해 지경부는 업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“성과공유제 연구회”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실시(주재 : 산업경제정책관) 한다.

□ 성과공유제 연구회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과공유 유형을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모델로 정립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,

○ 전경련(중소기업협력센터)이 민간부문의 모델 개발,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가 공공부문의 모델 개발의 총괄 책임을 맡게 된다.

○ 지경부는 이르면 올 6월까지 모델 개발을 완료하여 보급할 예정이다.

□ 박원주 산업경제정책관은 “그동안 성과공유제 시행여부에 대한 공식적 판단과 객관적 실적 측정·평가가 불가능했던 것이 성과공유제의 확산이 미흡했던 원인 중의 하나”라며,

○ “성과공유 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성과공유제 확산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<붙임1>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 계획
<붙임2> 성과공유제 연구회 운영 계획

참고1 **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및 활용계획**

1.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(지경부 고시) 주요내용

1 성과공유 확인 주체(제4조, 5조) :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(상생법 §8②)

○ (확산추진본부) 추진본부는 성과공유과제 확인신청에 대한 접수·처리,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확인제 시행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

○ (성과공유제 추진위원회) 성과공유제 추진에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경제단체·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운영

2 성과공유 확인 대상 및 요건(제6조, 7조, 8조)

○ (도입기업 확인) 시행계획서(2년간), 내부규정, 전담부서·인력, 과제계약서 등을 갖춘 기업에 "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" 부여(2년 유효)

○ (성과공유과제 확인) 도입 확인기업이 추진하는 개별 과제에 대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"성과공유과제 확인" 부여(3년 유효)

- 성과공유과제 계약서, 사업계획서의 사전등록, 수·위탁기업별 과제수행내역, 발생한 성과와 공유내역 증빙 등

3 사후관리·결과의 활용(제9조, 10조, 11조)

○ (확인취소)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거나 도입기업 확인 후 1년이내 과제 확인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 취소

○ (결과활용) 추진본부는 확산시책 수립, 실적점검,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관련 자료와 데이터 수집·분석

○ (포상 및 인센티브) 지경부 장관은 확인기업에 대해 행정·재정상 인센티브 부여와 포상 실시

2. 성과공유 확인제 실적 활용 계획

○ (동반성장지수) 과제 확인건수, 시행규모(매출액 대비 성과공유 규모) 등을 종합하여 등급별 가점 부여(1.0점 이내)

○ (공공기관 평가) '12년 실적 평가('13.3월)시 확인제 등록 실적 반영

* 성과공유제를 핵심간판과제로 선택한 기관에 한해 15~25점 내외 배정

○ (우수기업 선정·포상) 확인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기업·기관을 선정, 동반성장 주간행사(11월)시 포상 실시(6개 내외, 대통령·장관 표창)

○ (기타 인센티브) 확인 과제에 대한 공공기관 수의계약 허용, 기업·기관에 정부 조달·R&D 참여시 가점 부여 등

참고2 **성과공유제 연구회 운영 계획**

1. 추진배경

□ 성과공유제는 기업현장의 다양한 협력활동에 적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, 구체적인 모델의 개발·보급이 미흡하여 현장 확산에 애로

⇒ 업계를 중심으로 연구회를 구성·운영하여,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성과공유제 시행 모델을 개발·보급

2. 연구회 구성 · 운영(안)

□ (추진체계) 민간부문(총괄 : 전경련 중소기업연구센터)과 공공부문(총괄 : 확산추진본부)으로 나누어 별도 연구 추진

○ 기업 수용성과 현장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·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

성과공유제 연구회
(회장 :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)

지경부(사무관)

민간부문 (12명) **(총괄 :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센터 소장)**	**공공부문 (10명)** **(총괄 : 이상경 협력재단 본부장)**
(업계) 담당 부·차장급 – (제조업) 삼성전자, 현대차, SKT, 두산중공업, 현대중공업, 포스코 – (유통·건설) 롯데쇼핑, GS건설 (학계) 김수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(연구계) 산업연구원, 중소기업연구원	(기관) 담당 부·차장급 – (발전·플랜트) 한전, 남동발전, 동서발전 – (발전·플랜트외) 인천국제공항공사, 토지주택공사, 철도공사 (학계) 박진우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(연구계) 산업연구원, 중소기업연구원

□ (연구내용) 1단계(4~6월)에서는 모델 개발·보급에 주력하고, 2단계(6월 이후)에서는 제도개선·활성화 방안 등 정책개발 수행